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330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하 남 시 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 사무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 추진 필요성

- 現수탁기관(하남시 장애인연합회)의 위·수탁 기간 만료(2026.12.31.)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 성과평가(외부전문평가기관 용역) 실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65.87점)으로 평가되어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재계약 불가
- ※ (위·수탁계약서 제19조제3항)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0% 이상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으며, 70% 미만인 경우 사무위탁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속 운영이 필요하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하남시의회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자: 하남시장(교통정책과)

○ 수탁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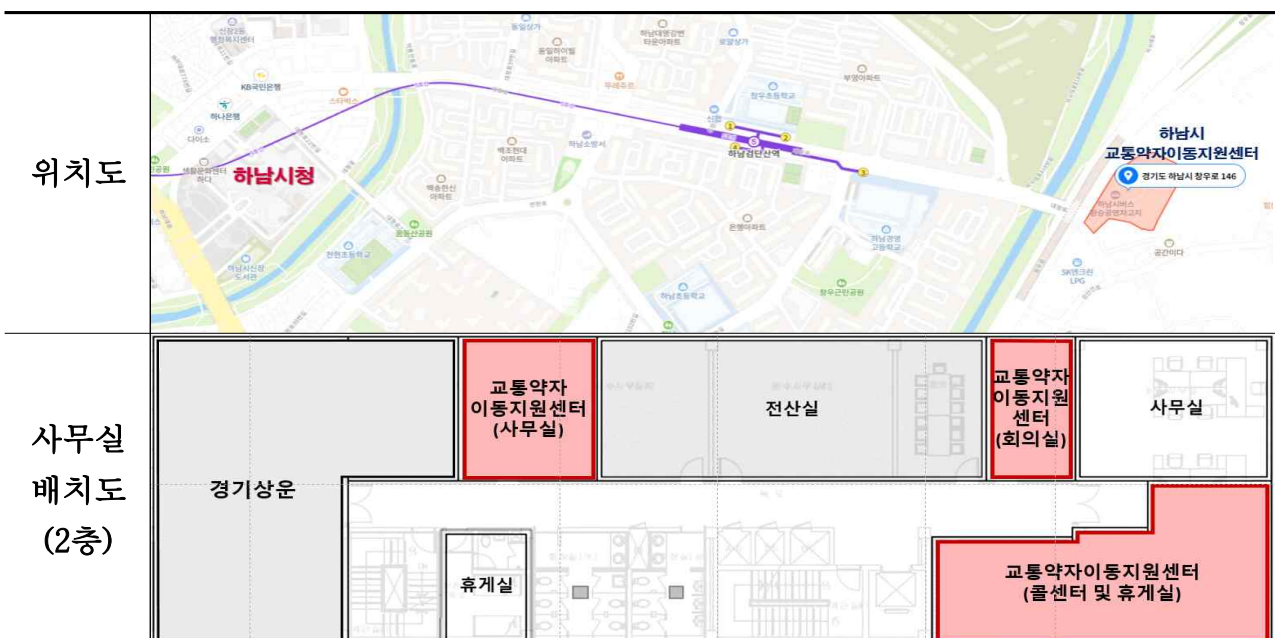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또는 연합회
- 교통약자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 위탁사무 내용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소재지 : 하남시 창우로 146, 2층 (BRT버스환승공영차고지내 사무실)
- 규모 : 141.68㎡ (사무실 36.85㎡, 회의실 23.58㎡, 콜센터·휴게실 81.25㎡)



○ 직원 및 차량현황

직 원 현 황 (명)					차 량 현 황 (대)			
계	센터장	행정 실장	행정·상담	운전	계	특별교통수단 (리프트)	특별교통수단외 (전기차)	바우처택시
42	1	1	6 (육아휴직1)	34	44	30	4	10

○ 등록이용자: 4,273명(2026. 7.기준)

○ 서비스 이용자수

(단위:명)

연도	계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교통약자전용차량	바우처택시
2024년	47,857	43,208	1,159	3,490
2025년	53,741	45,126	4,569	4,046
2026년(7월)	31,970	26,008	3,313	2,649

5.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
-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후 수탁기관 선정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26년 기준)

사업명	2027년 예산	산출근거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496,887천원 (국) 315,000천원(100%) (도) 954,566천원(30%) (시)2,227,321천원(70%)	- 총 액 : 3,496,887천원(100%) - 인건비 : 2,623,406천원 (75%) - 운영비 : 873,481천원 (25%)

※ 2027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분석기준		분석내용	분석결과	분석내용
적정성	㉠ 서비스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이용 대상의 일상생활 영향의 중요도	높음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서비스로 높은 공공성 요구
	㉡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	낮음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로서 수혜범위 한정적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보통	수탁기관 재무 상태 악화 및 노사 갈등으로 인한 중단 위험 존재(긴급 대체 운영안 등 안전장치 마련 필수)
	㉣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높음	서비스 중단 시 교통약자 출퇴근, 병원진료 등 생활 마비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높음	민간 운수업체나 단체의 축적된 노하우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
	㉦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높음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용(운전원 근무 교대 등)으로 공공직영 대비 운영 비용 절감 가능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높음	민간 운수업체나 단체의 축적된 노하우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높음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용(운전원 근무 교대 등)으로 공공직영 대비 운영 비용 절감 가능
	㉩ 관리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보통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주기적 회계감사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5조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민간 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방식(재위탁) 수행 적정

9. 향후 추진계획

- 2026. 9.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원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
- 2026. 10.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6. 11. 위·수탁 계약 체결
- 2027. 1. 신규 수탁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0. 참고자료 :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붙임 참고]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3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의2(선정방법 등)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2. 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교통약자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⑤ ~ ⑦ (생략)

⑧ 위탁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